

제336회 도의회 정례회 2차

제1차 건설소방위원회

2022. 12. 12.(월)

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건설소방위원회
전 문 위 원 실

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창석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박창석 · 백순창 · 한창화 · 허 복 · 이우청 · 박승직 ·
박순범 · 김창기 · 도기욱 · 남진복 의원 (10명)

2. 개정이유

○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변경을 통해 설치 지원 주택을
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변경(안 제3조)
- 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 · 관리 신설(안 제6조)
- 제명 및 조문 중 “주택 소방시설” 을 “주택용 소방시설” 로
정비(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)

4. 관련법령
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·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

률」 제8조
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

5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: 불임
- 규제심사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부패영향평가: 불임
- 해당부서 검토의견: 불임
-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불임

6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: 2022. 11. 30. ~ 12. 6.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-120호
- 의견제출: 의견 없음

7. 검토의견

가. 조례개정 필요성

-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변경을 통해 설치 지원 주택을 확대하기 위함

나. 조례안의 주요 내용

-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변경(안 제3조)

- 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 신설(안 제6조)
- 제명 및 조문 중 “주택 소방시설”을 “주택용 소방시설”로 정비(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)

다. 종합의견

- 금번 「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
- 개정 취지와 내용,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